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도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36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0723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2
4. 검토의견	3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임도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3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0723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임도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생 략)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5) (생 략) <u><신 설></u>	[별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5) (현행과 같음) <u>(9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사업</u>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林道)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6)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¹⁾에서는 토지등²⁾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수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³⁾.

한편, 현행 「토지보상법」 제20조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⁵⁾로 하여금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인정은 특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⁶⁾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별표에서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114개의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법 별표 제2호에 따른 95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지구 또는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현행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⁷⁾.

개정안은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임도사업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한국토지공법학회,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판단 기준 등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8.).

7)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의 상세 사항은 ‘참고 1’ 참조.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7234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도 사업⁸⁾(이하 “임도사업”이라 함)을 의미함.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 근거⁹⁾ 및 그 하위 법규에 따른 임도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보완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제정 법률안임.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산림이 전국토의 약 63%¹⁰⁾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률을 향상시키며 산림과 그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며¹¹⁾,

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7234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도(林道)”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 예방·대응 및 피해복구의 신속한 대응, 이동 및 접근, 산림휴양·레포츠 등을 위해 산림에 설치한 도로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임도사업”이란 임도와 관련한 조사·평가·설계·설치 및 유지·보수 등 임도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유림 소유주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10) 산림청이 2021년 9월 발표한 「2020년 산림기본통계」(5년 주기 공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 대비 산림률은 62.7%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목 통계(2023년 말 기준, ‘참고 2’ 참조)에 따르면, 임야는 약 634만㎢로 국토면적 대비 63.1%임.

11) 임도는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산림 접근성 개선과 임업기계화 향상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 공급 및 임산물의 생산을 증진하여 임업

1968년부터 설치가 시작되어 2024년 말 기준 26,785km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임도에 관한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인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10개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음.

산림자원 활용 및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산림관리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임도가 지속적으로 확대·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우리나라의 임도 설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저조¹²⁾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내에 임도를 설치하려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¹³⁾에

인의 소득을 증진하고, ②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산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③ 농·산촌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산촌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④ 그 밖에 산림휴양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 등이 있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2207234호) 검토보고서).

임도의 종류별 비교는 ‘참고 3’ 참조.

12) 주요국의 임도밀도(단위면적(ha)당 임도시설 거리) 현황

국가별	임도밀도(m/ha)	자료 출처
한국	4.1	2024년 산림임업통계연보('23년말 기준)
핀란드	5.8	'세계의 임도'(2018, 사카이 히데오)
미국(국유림)	9.5	2017년 한국농업과학저널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 비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11.3	2022년 British Columbia 주 홈페이지
일본	24.1	2023년 일본 임야청 산림·임업백서
오스트리아	50.5	2020년 Forest 학술지(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임도-오스트리아의 경험적 사례)
독일	54.0	2012년 일본 임야청 산림·임업백서

※ 자료: [산림청 누리집](#)(2025. 3. 31. 검색)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

따라 해당 임도예정노선 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림 소유자가 소유토지의 임도 편입에 동의하지 않거나¹⁴⁾ 산림소유자 중 부채산주¹⁵⁾가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임도 사업의 추진이 지연·중단되거나 당초의 임도예정노선을 변경·우회하여 임도를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¹⁶⁾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

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14) 사유림의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7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국유림 5.50m/ha, 사유림 3.81m/ha). 한편, 임도 편입대상지에 대해 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해 매수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임.

<2020년~2024년 국가임도 설치 관련 사유림 매수 실적>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도설치 개소(개)		3,029	509	546	636	612	726
임도설치 길이(km)		4,775	804	827	1,004	1,029	1,111
토지보상	계획면적(ha)	67.5	13.5	13.5	13.5	13.5	13.5
	예산(백만원)	6,750	1,350	1,350	1,350	1,350	1,350
토지보상	실행면적(ha)	4.9	0.3	1.7	1.0	1.6	0.3
	집행(백만원)	512	11	129	92	252	28

※ 자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7234호) 검토보고서

- 15) 산림청의 ‘2023년도 전국 산주현황’(2024. 7. 30.)에 따르면, 2023년 산주 2,172,356명 중 소재산주는 959,642명(44.2%), 관외거주 산주는 927,046명(42.7%), 부채산주(토지·임야대장 등으로 산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285,668명(13.2%)로 나타남.

- 1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7234호)

제 정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u>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임도노선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u>임도노선의 지정 고시</u>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u>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u> 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노선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률안에 따른 임도노선의 지정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지닌 임도의 효율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6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의 특례 규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의2¹⁷⁾를 고려할 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임도의 설치를 통해 조립 사업과 대형 산불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임도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임도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¹⁸⁾에 따라서도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입장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임도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최근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임도사업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개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참고 1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

자료 :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권 부여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1호 사업인정사업 (19개)	제2호 사업인정의제사업 (95개)
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사업 - 국방·군사, 철도·도로 등 공공사업, 청사 공장 등 공공용 시설사업, 주택 및 택지· 산단 조성사업 등 사업유형 열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사업 - 토지보상법 개정('15.12월)을 통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사업을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	
	〈사례〉 (1호) 국방대 이전 (2호) 비관리청도로공사 (3호) 공장, 정원, 갯벌, 지역특구 (4호) 우제류복원센터연구소 (5호) 행복주택 등	〈사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사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인정 권자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권자 (해당 기관장, 시·도지사 등)
인정 절차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공익사업 대상여부 검토(국토부)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 (인·허가·승인권자) →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고시 (인·허가·승인권자)
개정 연혁	수목원 조성 사업 추가('05년),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08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14년)	'20년 이후 별표 신설	
		수목원 조성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 추가('24.1)	해양클러스터법('21.1), 도시재생법, 빈집법('21.7), 수자원조사법('21.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법('23.10) 가덕도신공항법('24.9)
대상 사업 추가 요건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법 제4조의2제3항 신설로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 후 폐지·변경 또는 유지 조치 필요('21.10)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개별 법령 내용(사업내용 구체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공필요 사업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 요건 강화 등)
특징	①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 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부족 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토지보상법 별표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만으로 토지 수용 가능 (사업인정 거부가 없어 수용권 남발 가능성 존재) ② 사업인정기간 단축 (6개월→1개월)

참고 2

2024년 지목 통계('23년말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 m², 필지)

구 분		면적	비율	필지수	비율
전 체		100,449,356,102.0	100.0	39,631,891	100.0
1	전	7,474,837,850.0	7.4	7,185,811	18.1
2	답	10,938,018,187.5	10.9	7,890,961	19.9
3	과수원	605,116,886.0	0.6	290,031	0.7
4	목장용지	557,759,408.5	0.6	165,614	0.4
5	임야	63,369,784,315.3	63.1	4,919,790	12.4
6	광천지	5,223.3	0.0	298	0.0
7	염전	82,605,591.1	0.1	14,075	0.0
8	대(垓)	3,382,643,054.4	3.4	7,602,696	19.2
9	공장용지	1,101,398,873.0	1.1	321,653	0.8
10	학교용지	315,279,383.5	0.3	50,946	0.1
11	주차장	46,938,451.5	0.0	42,813	0.1
12	주유소용지	20,914,740.7	0.0	22,804	0.1
13	창고용지	154,310,568.8	0.2	148,435	0.4
14	도로	3,479,654,357.3	3.5	6,722,664	17.0
15	철도용지	145,460,077.4	0.1	146,936	0.4
16	제방(堤坊)	212,238,252.1	0.2	293,753	0.7
17	하천	2,867,934,768.9	2.9	783,493	2.0
18	구거(溝渠)	1,752,141,078.6	1.7	1,506,872	3.8
19	유지(溜池)	1,446,040,696.4	1.4	408,989	1.0
20	양어장	23,803,129.0	0.0	12,264	0.0
21	수도용지	55,417,900.2	0.1	64,780	0.2
22	공원	320,037,182.3	0.3	67,653	0.2
23	체육용지	404,689,221.7	0.4	36,705	0.1
24	유원지	53,716,856.6	0.1	16,118	0.0
25	종교용지	60,363,720.1	0.1	53,973	0.1
26	사적지	28,852,648.7	0.0	5,889	0.0
27	묘지	282,782,585.0	0.3	266,065	0.7
28	잡종지	1,266,611,094.1	1.3	589,810	1.5

참고 3

임도의 종류별 비교

자료 : 산림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제2205002호) 검토보고서)

가. 임도의 개념

○ 산림자원 경영·관리·보호를 위한 도로(林道)

－ 도로(길)는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이 있으며, 임도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공익적 활동을 위한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을 수행

* 임도는 도로(지목 : 道)와 달리 개설 후에도 지목 변경 없이 산림으로 관리

나. 임도의 종류별 비교

구분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시설 기준	○유효너비 : 3.5 ~ 5m *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의 교행을 위한 노폭 ○주·정차 및 산불대응장소, 차 량 교 행 장 소 (간 격 200~300m), 산불지휘본부 설치장소, 취수장 설치 등	○유효너비 : 3.0m 이상 ○대피소 설치 (간격 300m 이내) * 취수장 없음	○유효너비 : 2.5~3.0m ○목재생산·운반 등 기계 화에 필요한 최소규격
대 상 지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민가 주변 등 보호가 필요 한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 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한 지역	○인공 조림지 등 산림사업 이 집중되고, 기계화작업 이 시급한 지역
주요 기능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신 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 는 임도 －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투입 통로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 림경영과 산림정비를 주목 적으로 설치하는 임도 － 도로와 도로 및 마을 간 연결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 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간선임도에서 연결